2023년 왕궁면 종합감사 결과 보고

I 감사개요

O 감 사 기 간 : 2023. 7. 4. ~ 7. 6. (3일간)

O 감 사 범 위 : 2020. 11. 1. ~ 2023. 5. 31.

O 감 사 반 : 감사계장 등 4명

O 감 사 중 점

▶ 예산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 산업, 주민자치 분야 등 업무처리 적정 여부

▶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처리 적정 여부 등

Ⅱ 지적사항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14건	시정 4 주의 7 현지조치 1	세입 1 회수 1 (○○○)	주의 🌑
1	사무의 인계인수 소홀	주의		
2	물품 구입시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주의		
3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시정	세입 (▲▲천원)	주의 ■
4	공공기관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주의		
5	주민자치 공고 관련 업무 부적정	주의		
6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시정		
7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부적정	주의		주의 ■
8	기간제근로자 안전관리 업무 소홀	주의		주의 ■ (병합)
9	종량제 봉투 무료배부 업무처리 소홀	주의		
10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업무 소홀	시정		
11	인감변경신고 업무 소홀	주의		
12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천원)	
13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 업무 소홀	시정		주의 ■
14	보통예금계좌 관리 업무 소홀	현지조치		

지적사항 요약

1. 사무의 인계인수 소홀

 \mathbf{III}

- 「익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제2조(적용범위) 제1항에 따르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 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및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에 의하면 제2조에 해당하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 그러나 왕궁면에서는 왕궁면장의 퇴직 등으로 <u>사무인계인수가</u> <u>발생함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u> <u>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u>하여야 하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보고하지 않는 등 사무인계인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물품 구입 시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 「익산시 청렴계약제 운영규정」제2조(기본원칙)의 규정에 따르면 익산시에서 공사・용역・물품구매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무원은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는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별지 제4호서식)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제4조(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요령)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용(별제 제1호서식) 및 사업담당공무원용(별지제2호서식)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용역・물품구매의계약서류에 첨부하여야 하고, 제2항에는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4호의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이행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이행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별지 제4호서식)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별지 제5호서식)과함께 제출하여야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200만원미만의소액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 왕궁면에서는 <u>'2020년</u> ▲▲ ▲▲▲▲ ▲▲▲사업' 으로 4건의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공무원 및 사업담당공무원, 업체가 제출 해야 할 청렴이행서약서를 첨부하지 않아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별표4]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 이용 대금 결제 계좌로 입금 조치 하고,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 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 조치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 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결제일까지 이용대금 결제 계좌로 입금 조치하고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하여 통장잔액이 지급될 금액과 일치하도록 신용카드 통장관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
- 「지방회계법」제27조(지난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에 2항에 따르면 세출로써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폐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 ▶ 왕궁면에서는 2023. 1. 12. 기준 고정잔액 ●●●●●원이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유지되고 있으며, 원인파악 결과 20■■년도 ■■■■■ 환급금이 10.25일 입금되어 출납폐쇄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과목에 반납처리가 되지 않아 잔액으로 남아 있는 등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공공기관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되어 있음.
- 또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에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왕궁면은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위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했으나.
 - ▶ 왕궁면에서는 <u>2021 ~ 2022년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u> 연 1회도 실시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주민자치 공고 관련 업무 부적정

-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수강료)에 따르면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의 이용은 무료로 하되, 위원회는 시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17조(구성 등)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당해읍・면・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그러나 왕궁면에서는 <u>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및 반기별 수강료</u> <u>수입ㆍ지출내역에 관한 공고를 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 관련 공고</u>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 <u>「민방위기본법」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에 따라 읍면동에서는</u>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를 두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에 따르면 읍면동민방위협의회는 위원장과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고,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이 되며,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이 되며,읍면동민방위협의회 위원은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예비군 지휘권을 가진 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중대장 1명, 그 밖에 민방위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하고,읍면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에 관한 각기관 및 단체 간의업무 조정과 협조,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
- 「민방위 업무 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상대피시설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분기 1회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 및 이력 변동사항에 대해 읍・면・동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그러나 왕궁면에서는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7년 왕궁면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21년 7월 인사이동에 따른 위원장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읍면동민방위협의회를 재구성하지 않았고,
 - ▶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라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어야 하나, 2021년 비상대피시설로 신규 지정된 ○○○에 대해 지침에 따른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민방위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7.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부적정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15조에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음.
- 「익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65조(임금)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은 일급제로 하며,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다음달 5일에 근로자 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 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 ▶ 그러나 왕궁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에 대해 최장 27일 지연하여 지급하였으며, 2020 ~ 2022년 ■■■■ 인부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 없이 계약 종료시 임금 일괄 지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분 임금을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음.

8. 기간제근로자 안전관리 업무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

(관리감독자)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 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근로기준법」제76조(안전과 보건)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함.
 - ▶이에 왕궁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어야 하나, '■■■ ■■■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u>근로계약서상</u> '안전사고 발생 시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정함'의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 ▶ 현업업무종사자를 채용・관리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하나, '●●●●●●・●●●●● ●●●●' 등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미이행하는 등 왕궁면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9. 종량제 봉투 무료배부 업무처리 소홀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5조(수수료의감면)에 따르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인당 월 60리터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익산시 청소자원과에서는 매분기마다 각 읍면동에 종량제 봉투 무료배부 소요량을 파악하여 의료수급권자 1인에 한하여 180L(20L×9장)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무료 배부하고 있음.
- 종량제 봉투를 무료 배부 하였을 때에는 무료배부대장(수불대장)을 기록 관리하여 공급 및 수량 확인 등 종량제 봉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분기별 배부계획를 결재하여 담당자가 명단을 작성, 이장을 통해 대상자에게 일괄 배부하여야 함에도,
 - ▶ 왕궁면에서는 2022년 쓰레기봉투 ●●●매를 신청·수령하였으나 수급자 전출 또는 이사 등으로 ■■장을 미지급 하였고, 미지급된 쓰레기봉투는 다음 분기로 이월하지 않은 채 감사일 현재 캐비넷 등에 보관하고 있으며, 배부계획서도 수립하지 않은 등 무료공급 쓰레기봉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0. 장애인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 등록을 받은 사람이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 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에 따르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를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장애인복지법」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발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에 따르면 장애인사용 자동차의 소유지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등표지를 읍면동장을 거쳐 반납하여야 함.
 - ▶ 그러나 왕궁면에서는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명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미발송하였고, 차적변경, 공동소유주 상이 등으로 회수사유가 발생한 신▲▲ 등 ★★명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1. 인감변경신고 업무 소홀

- 「인감증명법」제3조(인감 신고 등)에 따르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며,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제5조(인감의 제한)에 따르면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서명확인 및 인감제도 사무편람'에 따르면 인감의 변경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첩부)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익산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인증기의 사용)에는 시장은 인증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수수료 납부)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인감변경신고 처리 후 수입증지를 관리대장에 첩부하여야 함.
 - ▶ 그러나, 왕궁면에서는 허●● 등 5명의 인감변경신고에 대한 수입증지를 최소 1일 ~ 최장 8일까지 지연하여 변경신고대장에 첩부하였으며, 인감 변경신고시 신고인의 성명과 다른 도장을 반려 및 보완요청 없이 부적정하게 수리한 사실이 있음.

12.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 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과 그 밖의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같은 법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제2항 및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에는 <u>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u> 지급대상 농지 자격검증 시 확인되는 농어촌공사로부터 확인한 농지 보전부담금이 납부된 농지의 부적합 안내 결과와 더불어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 중 새올행정시스템에 농지의 전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농지를 등록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따라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시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농지전용 여부 검증 결과와 함께 새올행정시스템의 농지 전용 현황을 확인하여 농지전용 면적을 제외하고 지급했어야 함에도, 왕궁면에서는 <u>기본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면서 농지전용이 신고된 농지의 전용면적을</u> 제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3.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 업무 소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의거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유통·기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6. 다음 각 목의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溉施設)의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의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에 의거 농지를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에 따르면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의 구분이 농업법인인 경우 농지법 제54조의2 제3항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예규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에 의거 시・구・읍・면의 장은 [별표 1]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정관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왕궁면에서는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 따른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에 대해 면밀히 심사확인 하였어야 하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외 사업 '부동산 임대 및 영농관련 금융업'이 등재되어있음에도 법인 등기 변경 요구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를 하는 등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4. 보통예금계좌 관리 업무 소홀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0조(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 의하면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할 수 있으며 경비에 해당되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2(계좌의 개설・관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계좌의 개설, 운영, 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3] 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별표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서는 구매카드결제 (신용카드, 제로페이 등)는 용도별로 각 1개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금 (기금, 세입세출외현금), 기타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의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 할 수 있고, 개설된 보통계좌들은 계좌 간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부서장, 관서별 지출원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왕궁면에서는 2020. 1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중인 보통예금(농협) ☆☆☆-☆☆-☆☆☆☆☆ 대하여 구매(법인)카드 결제로써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결제대금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전기요금 등 자동이체 목적으로 일시적 보관하게 된 경비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통장을 개설 하여 사용하여야 했으며, 고용보험료 환급금 및 보험료 등은 기타 수입으로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목적 외 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